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기준 및 식품 첨가물) 개정안, 2021》 발표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이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기준 및 식품 첨가물), 2011》을 수정하는 내용의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기준 및 식품 첨가물) 개정안, 2021》 초안을 공식 관보에 게재함
- 이번 개정안에는 부록 C의 "II. 식품 내 식품 첨가제 사용" 표 11 "효소(원료, 식품 또는 성분의 처리 및 가공을 위한)"의 뒤에 표 11A가 추가됨
- 표 11A: 유전자 변형 미생물(GMM)로부터 파생된 효소 총 45개의 기준 규격이 정리된 목록
- 주요 내용(표 11A의 성분 기준 규격 항목)
 - 효소 명칭
 - 생산 유기체
 - 기능 기술적 목적
 - 적용 식품 및 목적
 - 잔류 허용 기준(모두 GMP 수준으로 동일)

(*) 적용일: 관보에 사본을 게재한 날(2022년 1월 4일)로부터 60일 이후 결정됨

출처: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Food Safety and Standards - Amendment Regulations, 2021, 2022.01.04

TBT
이슈
바로가기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식품 안전 및 기준(광고 및 강조표시) 개정안, 2021》 발표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이 《식품 안전 및 기준(광고 및 강조표시), 2018》을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 안전 및 기준(광고 및 강조표시) 개정안, 2021》을 발표함
- 주요 내용(개정안의 변경 사항)
 - 규정 4. 일반 원칙(General principal)
 - 하위 규정(5) 질병 위험의 감소 강조표시 기준 수정
 - 하위 규정(7) 변형 조항 표시 규격 수정
 - 규정 5. 영양 강조표시(Nutrition claims)
 - 하위 규정(3) 영양소 표시에 사용하는 용어 및 동의어 기준 수정
 - 하위 규정(4) 영양소 비교 강조표시의 기준 수정
 - 하위 규정(6) 영양소 함량 동등성 강조표시의 기준 수정
 - 규정 6. 무첨가 강조표시(Non-addition claims)
 - 하위 규정(2) 나트륨 무첨가 강조표시의 기준 수정
 - 하위 규정(3) 첨가물 무첨가 강조표시의 기준 수정
 - 부록 1(영양 강조표시)와 부록 2(강조표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상 동의어) 수정

(*) 적용일: 관보에 사본을 게재한 날(2022년 12월 31일)로부터 60일 이후 결정됨

출처: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Food Safety and Standards (Advertising and Claims) Amendment Regulations, 2021, 2021.12.31

TBT
이슈
바로가기

일본 국세청, '주류의 원료로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규정 개정

- 일본 국세청은 「주세법 및 주류 행정 관계 법령 등의 해석 통달」 제3조 7항을 개정하여, '주류의 원료로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함
- 주요 내용('주류의 원료로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개정 사항)
 - 비타민류(염산티아민)와 제산제(탄산칼슘, 암모니아)의 규정 항목 순서 변경
 - 여과보조제(폴리비닐피롤리돈) 추가
 - 아르곤(Argon)의 포함 범위 변경:
 - (기존) 과실주 및 감미 과실주의 경우 주류 원료로 취급하지 않음
 - > (변경) 전 주류 품목에서 주류 원료로 취급하지 않음

(*) 한국은 일본으로 맥주, 사카주, 과실 발효주 등 다양한 품목의 주류를 수출할 수 있음

출처: 일본 국세청, 酒税法及び酒類行政関係法令等解釈通達の一部改正について(法令解釈通達), 2022.01.07

TBT
이슈
바로가기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일본 국세청, [주류 보존용 물질을 혼용할 수 있는 주류 품목 정의 등]의 일부 항목 개정

- 주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류 보존용 물질을 혼용할 수 있는 주류 품목 정의 등]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주요 내용(변경 사항)
 - (1) 품목: 전 주류 품목
 - 혼용 가능한 물질 중 "아르곤(Argon)"을 삭제
 - (2) 품목: 과실주 및 감미 과실주
 - 혼용 가능한 물질에 "아르곤"을 추가
- (*) 아르곤은 주류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 성분임
- (*) 시행일: 2022년 1월 7일

SPS



출처: 일본 국세청, 酒類の保存のため物品を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酒類の一部を改正する件, 2022.01.07

일본 후생노동성, 살충제 성분 카두사포스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 변경 공고

- 일본 후생노동성은 살충제로 사용되는 카두사포스(Cadusafos)의 최대 잔류 한계 기준을 일부 수정한 제안 규정을 공고함
- 주요 내용(변경 사항)
 - 감자: 0.03ppm → 0.02ppm
 - 우엉: 0.5ppm → 0.3ppm
 - 시금치: 0.1ppm → 0.05ppm
 - 딸기: 0.05ppm → 0.03ppm
 - 기타(우엉, 씬채소, 아티초크, 치커리, 꽃상추, 썩갠 상추(로메인 상추, 잎상추 포함) 및 허브류를 제외한 모든 복합채소): 규정 X → 5ppm 신규 규정
- (*) 상기 품목 모두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음
- (*) 시행일: 미정

SPS

출처: Epingalert, G/SPS/N/JPN/915, 2022.01.07

미국 환경보호청, 콩의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최대 잔류한계 기준 최종안 공고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문서번호 2022-00311을 발행하여 콩의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수정함
- 주요 내용(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품목 기준)
 - 콩(Pea and bean): 0.2ppm
 - 콩류, 식용 꼬투리(Legume, edible podded): 1.5ppm
- (*) 한국은 콩, 사이판으로 콩을 수출할 수 있음
- (*) 발효일: 2022년 1월 11일

SPS



출처: Federal register, Trifloxystrobin: Pesticide Tolerance, 2022.01.11

캐나다 해충관리규제당국, 일부 식품 내 티아페나실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 수정 제안

- 캐나다 해충관리규제당국(PMRA)이 해충관리법(Pest Control Products Act)에 따라 말린 콩, 포도, 가금류 등의 티아페나실(Tiafenacil)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수정하여 제안함
- 주요 내용(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품목 기준)
 - 말린 콩(Dry soybeans), 포도(Grapes), 가금류(Poultry): 0.01ppm
- (*) 한국에서 캐나다로 콩, 포도,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음
- (*) 시행일: 미정

SPS



출처: 캐나다 보건부, Proposed Maximum Residue Limit PMRL2022-01, Tiafenacil, 2022.01.06